

1. 개정이유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에 대해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경우 게재하여야 하는 항목이 불명확하여 소비자가 자동차 매매유형 등을 오인하거나 매매알선수수료 등 예측지 못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광고 게재 항목에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유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경우 게재하여야 하는 항목에 직접매도 또는 매매알선 여부, 타 자동차매매업자 소유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해당 매매업자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안 제120조제4항제7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6. 00. ~ 2025. 8. 00.) 예정

3) 행정규제 : 국무조정실 사전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

1건으로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예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광고를 게재한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유형에 관한 사항

가. 직접매도 : 자동차매매업자 소유의 매매용 자동차를 직접 매도하는 경우

나. 매매알선 : 타인 소유의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타 자동차매매업자 소유의 자동차인 경우 해당 자동차를 소유한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① ~ ③ (생략)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8조제4항에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u>광고를 게재한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유형에 관한 사항</u>
	<u>가. 직접매도 : 자동차매매업자 소유의 매매용 자동차를 직접 매도하는 경우</u>
	<u>나. 매매알선 : 타인 소유의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타 자동차매매업자 소유의 자동차인 경우 해당 자동차를 소유한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u>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